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토록 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소방청장이 시의적절하게 기록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,

과태료 부과 등 국민 권리 제한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록하고”를 “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다목 중 “부과처분을”을 “행정처분을”로, “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”을 “행정처분 차수(가중처분 적용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4 제1호다목 중 “부과처분을”을 “행정처분을”로, “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”을 “행정처분 차수(가중처분 적용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6 제1호나목 중 “(가목에 따른”을 “(가중처분 적용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

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소방장비의 점검 등) ① (생략)	제36조(소방장비의 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기록하고</u> , 이를 기 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 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소방청장이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기록하고</u> ----- 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2]

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(제21조제2항 관련)

현행	개정안
1. 일반기준 (생략) 가.·나. (생략)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<u>부과처분을</u>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<u>부과처분 차수</u>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	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<u>행정처분을</u>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<u>행정처분 차수</u>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<u>단,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</u>

[별표4]

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(제42조 관련)

현행	개정안
1. 일반기준 (생략) 가.·나. (생략)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<u>부과처분</u>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<u>부과처분 차수</u>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	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<u>행정처분</u>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<u>행정처분 차수</u>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<u>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</u>

[별표6]

과태료 부과기준(제48조 관련)

현행	개정안
1. 일반기준 (생략) 가. (생략)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<u>가목에 따른</u>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	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<u>가중처분 적용</u>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<u>단,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장비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682